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36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김소희 · 김상훈 · 우재준
조승환 · 유용원 · 강선영
조배숙 · 박준태 · 박성훈
조경태 · 강대식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